



저작자표시-비영리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 請求論文
指導教授 李 恒 碩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의
현황 및 개선사항
-소득대체율 중심으로-

成均館大學校 一般大學院

保 險 計 理 學 科

孫 炫 攝

碩士學位請求論文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의
현황 및
개선사항

2014

孫炫攝

碩士學位 請求論文
指導教授 李 恒 碩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의
현황 및 개선사항

-소득대체율 중심으로-

Study on retirement pension replacement rate

成均館大學校 一般大學院

保險計理學科

孫 炫 攝

碩士學位 請求論文
指導教授 李 恒 碩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의 현황 및 개선사항

-소득대체율 중심으로-

Study on retirement pension replacement rate

이 論文을 保險計理學 碩士學位請求論文으로
提出합니다.

2014 年 10 月 日

成均館大學校 一般大學院

保 險 計 理 學 科

孫 炫 攝

이 論文을 孫炫攝의 保險計理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認定함

2014 年 12 月 日

審査委員長 洪 宗 선

審査委員 서 병 태

審査委員 이 항 석

목차

제1장 서론	1
1. 연구목적	1
2. 선행연구	3
3. 연구방법	4
4. 논문의 구성	5
제2장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	6
1. 퇴직금제도	6
2.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7
(1)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연금제도	8
(2)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연금제도	9
(2) 개인형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11
3. 과세체계	12
4. 지배구조	15
5. 적립금 운용방법	16
6. 퇴직연금제도 현황	20

제3장 퇴직연금제도 소득대체율의 분석가정 및 결과	22
1. 소득대체율 개념	22
2. 분석가정	23
3. 분석결과	26
제4장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 개선사항	37
제5장 결 론	39
<참고문헌>	40

표목차

<표 2-2-1>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11
<표 2-4-1> 근속연수 공제액	14
<표 2-4-2> 총 연금액에 따른 연금소득공제액	15
<표 2-4-3> 종합소득과세표준별 적용세율	15
<표 2-5-1> 확정급여형제도(DB)의 위험자산 투자한도	17
<표 2-5-2> 확정기여형제도(DC) 및 개인형퇴직연금의 위험자산 투자한도	18
<표 2-5-3> 집중투자한도에 대한 특례	19
<표 3-1-1> 연령별 소득지수	23
<표 3-2-1> 연금종류별 퇴직연금 소득대체율	26
<표 3-2-2> 연금종류별 퇴직연금 소득대체율	27
<표 3-2-3> 연금종류별 퇴직연금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기준)	27
<표 3-2-4> 연금종류별 퇴직연금 소득대체율(최종소득기준)	28
<표 3-2-5> 보험요율 시나리오	34
<표 3-2-6> 보험요율 13.8%일 때 소득대체율	35
<표 3-2-7> 보험요율 시나리오	35
<표 4-1-1> 퇴직연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7

그림목차

<그림 1-1-1> 우리나라 노후보장 체계	2
<그림 2-6-1> 연도별 전체 적립금 현황	20
<그림 3-2-1> 가입기간별 소득대체율	29
<그림 3-2-2> 운용수익률 변화에 따른 소득대체율	29
<그림 3-2-3> 가입기간에 따른 각 연금별 소득대체율	30
<그림 3-2-4> 운용수익률에 따른 각 연금별 소득대체율	31
<그림 3-2-5> 임금상승률 변화에 따른 소득대체율	32
<그림 3-2-6> 임금상승률 변화에 따른 각 연금별 소득대체율	32
<그림 3-2-7> 연금종류별 퇴직연금 소득대체율	33
<그림 3-2-8> 수급기간에 따른 퇴직연금 소득대체율의 변화	36

논문요약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의 현황 및 개선사항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는 2005년 12월에 도입되어 약 10년의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퇴직연금은 기대여명증가로 인해 길어지는 노후생활에 국민연금과 더불어 역할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퇴직연금제도의 개선사항을 알아보기 전에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산출하였다. 분석 결과 20년 가입기준으로 수급기간 5년 확정연금의 경우 37.4%(생애평균소득)과 47.8%(최종소득)으로 가장 높은 소득대체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24년 확정연금이 10.9%(생애평균소득)과 14.0%(최종소득)으로 가장 낮은 소득대체율을 보이고 있다. 가입기간, 운용수익률, 임금상승률은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의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통해 개선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 기대여명, 개선사항, 소득대체율, 종신연금, 퇴직연금, 확정연금.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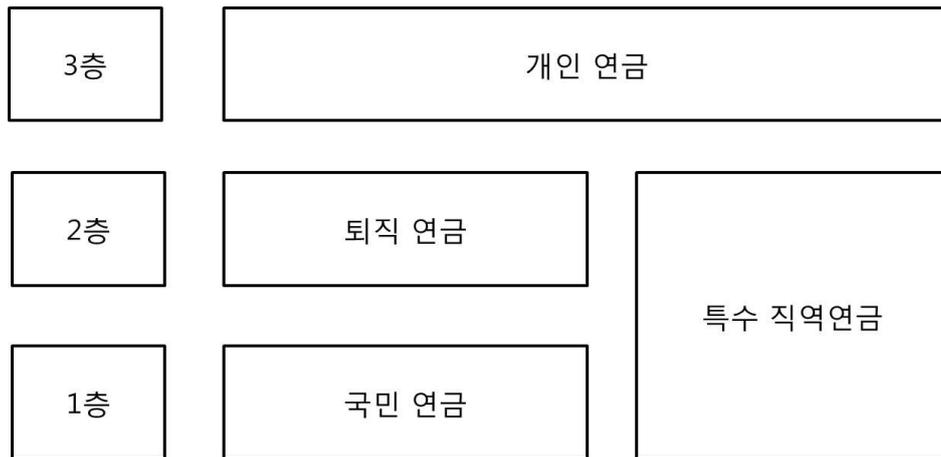
의료기술의 발달, 저 출산 및 생활환경 개선 등으로 인한 평균수명 증가로 인해 우리나라는 급속하게 초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또한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풍토가 많이 사라지면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노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미래에 대한 준비를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OECD(2013)에서 OECD국가를 대상으로 65세 이상의 빈곤비율(poverty rate)¹⁾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빈곤비율은 약 47%로 조사대상 국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50%에 육박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조사대상 국가들의 빈곤비율의 평균은 12.8%를 나타내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차이는 약 35%p가 차이가 나고 있다. 빈곤비율이 가장 낮은 네덜란드와 비교했을 경우 약 40%p가량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높은 호주도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약 10%p가량 낮다. 이 결과는 우리나라의 노후소득수준이 심각하다는 것을 판단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노후소득에 관련된 사항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주의와 관심이 늘어나고 있지만, 실질적인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그림 1-1-1>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는 1층은 국민연금 2층은 퇴직연금 3층은 개인연금인 3층 구조로 되어 있다. 공무원, 사학교직원, 군인 등은 특수직역연금을 받게 된다. 특히 퇴직연금은 2층에 해당되며 가입대상은 직장근로자와 자영업자이다. 2005년 12월 도입된 퇴직연금제도는 2012년 7월 26일 이후 새로 설립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1) 전체 노인 인구 중 소득이 전체 가구 가처분 소득 중위수준의 50% 미만인 노인 인구비율

도입해야 하고²⁾ 기존의 사업장들은 전환을 하고 있지만 아직 도입한 사업장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림 1-1-1> 우리나라 노후보장체계³⁾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가입기간 40년 기준으로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점차적으로 60%에서 40%까지 낮추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한정림(2013)에서 국민연금 가입자의 전이확률을 반영하여 가입기간을 추정 한 결과 남자가 약 22.16년, 여자 약 16.8년으로 분석이 되고 있으며, 현재 취업나이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40년 동안 가입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다. 평균소득가입자 기준으로 20년 가입 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소득수준에 따라 남자의 경우 약 15.8%~31.8% 여자의 경우 12.1%~24.3%로 나타나고 있다. 국민연금의 실질적 소득대체율은 약 20%의 수준을 가지고 있어 노후대비를 하기에는 부족하고 사적연금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까지 부족한 상황에서 퇴직연금의 필요성은 중요해 질 것이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법률 제 10967호 제 5조

3) 퇴직연금 실무해설서(2010)

퇴직연금은 2005년에 도입되어 우리나라 노후보장체계 중 가장 나중에 도입된 제도이다. 도입된 지 약 10년 남짓 된 퇴직연금은 아직 사람들의 인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퇴직연금에 대한 규제나 환경이 부족한 부분이 많다.

2. 선행연구

대부분의 국내 연구들은 퇴직연금만 관련해서 소득대체율을 산출한 연구는 많지 않고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즉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를 이루고 있는 3층 구조의 연금소득대체율을 산출하여 비교분석 하고 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수지상등원칙으로 연금액이 산출되기 때문에 소득계층별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한정림 외(2013)는 국민·퇴직·개인연금의 소득대체율 산출을 위한 연금수리모형을 제시를 하고 있다. 퇴직연금의 보험료 납부를 위한 소득의 가정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의 소득으로 가정하였으며, 가입기간은 가입자의 전이확률을 반영하여 생애 총 가입기간을 계산하였다. 추정된 가입기간은 국민연금의 경우 남자가 약 22.16년 여자가 약 16.82년도로 분석이 되고 퇴직연금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약 5.04~5.86년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소득대체율은 생애소득 대비 연금수급 첫해 연금월액으로 산출되어지며,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의 경우 남자는 약 8%~11.5%이며, 여자는 약 4.4%~7.5%수준으로 산출되었다.

강성호(2011), 강성호 외(2005)는 생애기간을 고려하여 국민·퇴직·개인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산출하고 있다. 가입기간을 20년과 40년으로 나누고 20년은 선후 가입으로 구분하여 생각하고 연금수급기간은 평균 기대여명을 고려하여 20년간 수급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강성호(2011)는 가입기간이 20년일 경우 퇴직연금 소득대체율은 14.2%, 40년 가입기준으로 28.3%로 산출 되었다. 강성호 외(2005)는 20년 선

가입은 17.2%, 20년 후 가입은 15.6%, 40년 가입은 32.8%로 산출 되었다.

류건식 외(2008)는 사적연금을 중심으로 소득대체율을 제시하고 있다. 은퇴 전 소득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소득평균(노동부 통계)과 평균임금상승률 4.7%를 기초로 근로기간은 28년의 은퇴 전 근로소득액을 산정하면 약 695만원으로 추정된다. 임금상승률은 평균임금상승률 4.7%기준으로 +1%, -1%를 가정하여 시나리오 분석을 하였다. 가입기간은 20년, 25년, 28년, 30년, 35년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다. 임금상승률 4.7% 운용수익률 3.79%라고 할 때, 가입기간별로 최소 11.5%~13.6%로 나타났다.

신승희 외(2014)는 생존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대체율을 반영하고, 하나의 지표로써 생애평균소득대체율을 제시하고 있다. 20년 가입 시 남자의 생애소득대체율은 38.3%, 여자의 생애소득대체율 41.1%로 예상하고 있다. 퇴직연금의 경우 9%(남자), 7.4%(여자)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3.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EXCEL를 이용하여 퇴직연금의 2014년 신규가입자를 대상으로 퇴직연금 소득대체율을 산출한다.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입기간(재직기간), 운용수익률, 임금상승률에 따른 민감도 분석도 하였다. 또한 2012년도 국민생명표를 이용한 생존률을 바탕으로 종신연금을 산출한다.

4. 논문의 구성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의 전반적인 소개 및 설명을 하였다. 3장에서는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 산출을 위한 가정을 설명하고, 소득대체율 분석하였다. 4장에서는 퇴직연금제도의 개선방안을 소개 및 설명하고 5장에서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제2장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

1. 퇴직금제도

1953년 근로기준법에 의해 시행된 퇴직금제도는 당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시에만 퇴직금이 지급되고 근로자에 의한 귀책사유는 지급하지 않는 형태였다. 하지만 1961년 3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퇴직사유에 관계없이 1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게끔 의무 적용하도록 강제화 되면서 법정제도로 발전하였고, 그 범위가 1975년에는 16인 이상의 사업체, 1987년에는 10인 이상의 사업체, 1989년에는 5인 이상의 사업체로 점차 확대되었다.

1997년에 도입된 퇴직금중간정산제는 근로자가 퇴직을 하기 전에 근로자의 요구에 의해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을 수 있는 제도였지만 퇴직 전에 미리 퇴직금을 써버리는 바람에 노후소득보장의 목적에 좋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1998년에는 임금채권보장법이 도입되었는데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의 최소한의 보장을 위한 안전망이었다. 임금채권보장제도는 기업이 도산하여 근로자가 임금등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 국가에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 일정 범위 내에서 국가가 기업을 대신하여 지급해주는 제도이다. 그 범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과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이다. 그래서 기업은 국가에 일정비율의 부담금을 납입한다. 하지만 퇴직연금도입 시 부담금을 최대 50%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1998년과 2000년에 도입된 퇴직보험과 퇴직신탁은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였지만 여러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2010년 12월 31일에 폐지되었다.

퇴직금의 산정방법은 계속근로기간⁴⁾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계산

4) 동일한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

한다. 1년 미만인 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자도 퇴직금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퇴직금제도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퇴직금 지급조건이 달리하거나 직위별, 직급별 혹은 직종별로 차등을 두거나 누진율을 달리하는 차등제도를 할 수가 없다. 퇴직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하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시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제도는 임금과 퇴직금에만 적용되며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지급기일이 연장되더라도 지연이자는 지급되어야 한다.

2.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퇴직금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퇴직금제도의 문제점은 잦은 이직과 중간정산, 조기퇴직 등으로 생기는 퇴직금을 적립할 수 있는 장치가 없고, 실질적으로 노후대비를 위한 자금이 아닌 생활자금으로 사용되어지면서 노후소득보장의 기능을 잃어버렸다. 또한 사외적립을 강제하지 않고 기업의 능력에 맡기면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사내적립을 하게 되면서 기업이 도산하거나 경영이 악화되면 근로자들은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기게 되고 가능성도 높아지면서 근로자의 퇴직금의 수급권 보장이 어려워졌다. 그래서 2005년 12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시행과 함께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도가 마련되었다.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면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급여 재원의 사외적립 의무화로 인해 수급권이 강화되었으며 근로자가 직접 운용지시가 가능하여 개인의 성향에 따라 운영방법의 선택권이 보장이 되어 개인의 성향이 반영이 될 수 있고 이직이나 중간정산 시 부과되던 세금이 은퇴 후 연금수령 시로 이연이 되어 실질 소득 또한 늘어난다. 또한 개인형퇴직계좌(IRA)가 생기면서 이직 시 생기는 퇴직급여가

자연스럽게 이전되면서 퇴직급여의 중도 소진을 막고 다양한 노후 설계로 노후소득을 위한 재원마련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생겼다. 기업 입장에서는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액이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어 법인세의 절감효과로 인해 부담금 납입액을 세무상으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기업의 부채비율을 개선하는 효과도 나타났다. DB형의 경우 사외 적립된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확정급여채무의 차감항목으로 계상되어 순부채의 감소효과를 가져왔고, DC형의 경우 회사가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금을 비용으로만 인식하고 퇴직연금 관련 부채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부채비율 감소효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퇴직급여 비용부담이 평준화 되는 효과를 가진다. 왜냐하면 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퇴직급여에 관해 합리적인 재무계획을 세울 수 있다. 그리고 확정기여형연금제도 도입으로 인해 연봉제, 임금피크제와 같이 다양한 임금체계를 잘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 크게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로 나누어지며, 퇴직연금제도는 다시 확정급여형연금제도(DB)와 확정기여형연금제도(DC)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퇴직연금제도와 별개로 개인형퇴직연금(IRP)이 있다.

(1)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연금제도

확정급여형 연금제도는 수령할 퇴직급여 산식이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과 근속연수에 따라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제도이다. 기존의 퇴직금제도의 퇴직금과 동일하다. 부담금은 기업에서 부담하고 연금계리 방식에 의해 산출된다. 적립금 운용도 기업에서 하고 있으며, 2010년 기준으로 최저 적립금은 예상 퇴직급여의 60%는 적립하고 있어야 한다. 장래퇴직급여 수준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 적립금 운용에 대해 책임이 없다.

확정급여형 제도의 장점은 임금상승률이 반영되어 안정적인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 따라서 적립금운용에 상관없이 일정한 수준의 연금급여수준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반면에 기업 입장에서는 기금운용의 리스크를 모두 부담하게 된다. 또한 노후생활자금의 설계가 용이하다. 퇴직급여산식이 미리 정해져 있어 미래에 퇴직급여가 얼마나 될지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업입장에서 DB형 제도는 우수 인력의 유치 및 지속근무를 유지시킬 수 있는 장치이다. 왜냐하면 장기간 근무를 할수록 퇴직급여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단점은 DB형 제도는 급여수준에 대한 보장성은 있지만 이동성에 제한적이다. 특히 우리나라 노동시장처럼 근속기간이 짧고 직장 간 이동이 많은 환경에서 도입하기에는 문제점이 많다. 임금인상률이 낮으면 그만큼 퇴직급여도 낮아진다. 임금체계변경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기업입장에서는 DB형 제도가 DC형 제도보다 운용비용이 더 크다는 단점도 있다. DB형 제도는 연금기여율이 정해져 있지 않고 최종급여만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운용비용에 대한 예측 및 관리가 어렵다.

(2)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연금제도

확정기여형 연금제도는 기업의 부담금 수준이 임금총액의 일정 비율로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제도이다. 기업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의 부담금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부하며, 근로자는 적립금 운용성과가 반영된 퇴직급여를 수령하게 된다. 부담금은 확정급여형 연금제도와 마찬가지로 기업이 부담하지만, 근로자가 추가납입이 가능하다.

확정기여형 연금제도의 장점은 적립액이 근로자의 계좌에 정기적으로 들어오게 되므로 근로자가 자신의 적립액에 대해 확인이 가능하고 접근하기도 좋기 때문에 퇴직급여에 대한 보장성 및 건전성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 제도간의 이동성도 자유롭기 때문에 직장이동으로 인한 불이익 없이 연금적립액을 쌓아갈 수 있다.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 운용에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운용수

익월에 따라 퇴직급여의 증가가 가능하다. 임금 총액의 일정 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임금체계변경에도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 단점은 근로자가 직접 연금 적립액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변화에 따라 퇴직급여의 수준에 영향을 받아 퇴직급여 수준이 불확실해진다. 하지만 기업입장에서는 적립금 운용에 따른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장점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적립금 운용에 대해 근로자가 매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표 2-2-1>는 확정급여형 연금제도와 확정기여형 연금제도를 비교한 표이다. 확정급여형 연금제도와 확정기여형 연금제도는 근로자나 기업의 입장에서 서로 다른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좋은 방법인지는 선택할 수 없다. 그래서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제도의 장점만을 부각시킬 수 있는 혼합형의 제도들이 있다. 대표적인 예로 Cash Balance와 Floor Plan제도가 있다.

Cash Balance는 기본적인 틀은 확정급여형 제도이지만 각 근로자는 DC형 제도에서처럼 현재까지의 적립금에 대한 이자를 적립할 수 있는 개별 계좌가 있기 때문에 이직을 하게 될 경우 적립금과 이자를 함께 받을 수 있고, 끝까지 재직하는 경우 예정된 퇴직급여를 받게 되는 제도이다. 한마디로 확정급여형 제도의 단점을 확정기여형 제도의 장점으로 커버할 수 있는 제도이다.

Floor Plan는 Cash Balance의 변형된 형태이다. Floor Plan는 반대로 기본적인 틀은 확정기여형 제도이지만 이 제도는 확정기여형 제도의 특징인 근로자가 투자해서 손실이 나면 근로자의 책임이지만 최소한의 퇴직급여를 보장해주면서 단점을 최소화 시켜준다. 이 제도는 확정기여형 제도의 단점을 확정급여형 제도의 장점으로 커버할 수 있는 제도인 것이다.

<표 2-2-1>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⁵⁾

항목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기여	주로 사용자	1. 사용자 기여 2. 근로자 기여 3. 근로자기여와 이에 상응하는 사용자의 대응기여
관리의 형태	근로자 전체의 신탁	근로자 전체 신탁을 개인별로 구분하여 운영
운용의 책임	사용자	근로자
이전성	설계상 어려움	매우 용이함
급여의 보장	사용자 또는 연금펀드 도산 시 최소급여 보장	개인별로 운영하기 때문에 보장이 필요 없음
규제 및 감독	적립의 규모 등 규제가 많음	사용자 기여와 관리책임 이외에 규제가 거의 없음
교육 및 자문	사용자가 책임지므로 교육이 필요가 없다	운용을 위해 매우 중요
사용자 B/S	상세내역 기재	기여미달/과다 액만 기재
선호계층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은 근로자/ 전통적 제조 및 서비스 산업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은 근로자/ 전문직 및 정보기술산업 등

(3) 개인형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퇴직연금(IRP)는 개인퇴직계좌(IRA)였지만 2012년 7월부터 용어가 변경되었다. 개인형퇴직연금(IRP)는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등이 수령액을 적립 및 운용하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설정한 저축계정이다. 개인형퇴직연금(IRP)는 중간정산 및 잦은 직장 이동으로 인하여 퇴직급여가 생활자금으로 소진되

5) 근로자의 노후보장을 위한 퇴직연금(2006)

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가입대상은 일시금 수령자 및 퇴직연금에 이미 가입한 재직근로자이고 자영업자는 2017년부터 가능하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퇴직근로자는 퇴직청구 시 자동이전이 되고 퇴직연금에 가입한 재직근로자는 수시로 가입이 가능하다.

퇴직연금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1인 이상 기업은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이상의 제도는 무조건 채택 하여야 한다. 퇴직금제도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해야한다. 하지만 개인형퇴직연금(IRP)는 퇴직급여제도에 포함되지 않지만, 1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들을 위해 기업형 IRP를 설정할 경우 퇴직급여제도를 채택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3. 과세체계

퇴직연금제도의 과세는 부담금 납입, 적립금 운용수익 발생, 퇴직급여 수령 시 과세를 하는 방법이 있다. 우리나라는 부담금 납입과 적립금 운용수익 발생에서는 과세이연을 시키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퇴직급여 수령 시에만 과세를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부담금 납입 시에는 사용자 입장에서 확정급여형은 퇴직금 추계액 범위 내에서 납입한 부담금 전액을 손금산입⁶⁾하고 확정기여형에서는 납입한 부담금 전액을 손금산입 한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확정급여형은 개인이 납입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지만 확정기여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에서는 연금저축 불입액과 합산하여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운용수익이 발생할 때는 과세이연이 적용된다.

퇴직급여 수령 시 퇴직연금을 받을 경우와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 과세가 다르게

6) 법인의 지출내역 등에 대해 세법상의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적용된다. 퇴직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금액 산출 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⁷⁾가 적용된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합산한 연금액이 1200만 원이하인 경우 3~5%로 과세가 종료하는 분리과세⁸⁾ 선택이 가능하다.

일시금으로 수령 시 정률공제(정률공제비율 40%), 근속연수공제, 연분연승법⁹⁾이 적용된다.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총당금을 사내에 적립할 경우 동 총당금의 손금산입 한도는 2014년 현재 10%이며 매년 5%씩 축소시켜 2016년에는 폐지가 될 예정이다.

일시금 수령 시 세액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 시 수령하는 금액을 계산한다. 퇴직소득 공제액은 정률공제와 근속연수 공제의 합으로 산출 할 수 있다. 정률공제는 퇴직소득금액에 40%를 곱한다. 근속연수공제는<표 2-4-1>에 따라 이루어진다.

<표 2-4-1> 근속연수 공제액

근속연수	공제액
1~5년	30만원 × 근속연수
6~10년	150만원 + 50만원 × (근속연수 - 5년)
11~20년	400만원 + 80만원 × (근속연수 - 10년)
21년 이상	1,200만원 + 120만원 × (근속연수 - 20년)

출처 :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종합안내 홈페이지

정률공제와 근속연수공제를 다음과 같이 구하면 퇴직소득공제액이 구해진다. 퇴직소득금액에서 퇴직소득공제액을 빼면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구할 수 있다. 퇴직소

7)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및 기타소득의 6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8) 기준금액 이하인 금융소득, 일용근로소득, 소액연금, 복권 당첨소득 등에 대해 원천징수로써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9) 퇴직소득 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대해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동 세액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최종 세액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과세표준을 가지고 다음의 식을 통해 산출세액을 계산 할 수 있다.

$$\text{산출세액} = (\text{과세표준} \times 5 \times \frac{1}{\text{근속연수}} \times \text{기본세율} \times \frac{1}{5}) \times \text{근속연수}$$

연금 수령 시 세액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총 연금액은 국민연금(또는 특수직 연금) 수령액과 퇴직연금 수령액과 개인연금 수령액의 합으로 산출한다. 소득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납부한 부담금은 납입 시에 소득세를 이미 납부하였기 때문에 연금 수령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게 된다. 연금소득금액은 총 연금액에서 연금소득 공제액을 뺀 값이다. 연금소득공제액은 <표 2-4-2>에 따라 산출된다.

<표 2-4-2> 총 연금액에 따른 연금소득공제액

총 연금액	연금소득공제액
350만 원이하	총 연금액
350~700만 원	350만 원 + (총 연금액 - 350만 원)×40%
700~1,400만 원	490만 원 + (총 연금액 - 700만 원)×20%
1,400만 원 초과	630만 원 + (총 연금액 - 1,400만 원)×10%

출처 :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종합안내 홈페이지

종합소득금액은 연금소득금액과 연금소득금액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의 합으로 산출된다.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 공제액을 뺀 값이 종합소득과세표준이 된다. 종합소득공제액을 이용하여 종합소득산출액을 구할 수 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곱해주면 된다. 적용세율은 <표 2-4-3>과 같다.

<표 2-4-3> 종합소득과세표준별 적용세율

과세표준	적용세율
1,200만 원이하	6%
1,200~4,600만 원	72만원 + 1,200만 원 초과액 × 15%
4,600~8,800만 원	582만원 + 4,600만 원 초과액 × 24%
8,800~3억 원	1,590만원 + 8,800만 원 초과액 × 35%
3억 원 초과	9,100만원 + 3억 원 초과액 × 38%

출처 :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종합안내 홈페이지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시 과세방법은 다음과 같다. 중도인출은 확정기여형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에서 가능하며 가입자의 주택구입이나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6월 이상 요양, 천재지변 발생에 의해 허용이 된다. 인출 시 인출금에 대해 퇴직소득으로 과세가 된다. 이직에 따른 퇴직연금 이전 시에는 과세이연이 된다. 퇴직급여 수령 시 퇴직소득으로 과세가 된다. 다만, 수령 후 60일 이내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이전 시 당해소득은 이전 후 실제 지급받을 때 과세되며, 퇴직소득의 근속연수 공제 계산 시 이직 전 근무기간도 합산된다. 일시금과 연금형태로 나누어서 수령할 경우는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text{퇴직소득 산출세액} = \text{일시금 전부 수령시의 퇴직소득세} \times \frac{\text{실제수령액}}{\text{일시금 총지급가능액}}$$

4. 지배구조

퇴직연금의 지배구조는 계약형, 기금형, 회사형으로 구분된다. 계약형은 연금자산의 관리 및 운용을 관련 금융기관에 계약을 통해 일괄 위탁하는 형태이고, 기금형은 기업과 별도로 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을 연금자산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하

는 방식이며 미국, 영국,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계약형과 기금형 둘 다 허용하고 있다. 회사형은 산업별로 기금을 설치하여 산업전체의 연금자산을 관리 운용하는 형태로 네덜란드, 프랑스, 덴마크 등이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의 지배구조는 계약형을 채택하고 있다. 노사에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기로 한 경우 사용자는 다시 근로자 대표¹⁰⁾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규약을 만들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된다.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맺어 퇴직연금업무를 위탁하는 것이다. 퇴직연금을 노사와 합의하여 결정하고 근로자 수급권 보호를 위한 모든 행위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되는 구조이다.

5. 적립금 운용방법

우리나라 퇴직연금의 적립금운용방법은 예/적금, 보험계약, 유가증권, 기타운영방법이 있다. 보험계약에는 이율보증형 보험, 금리연동형 보험, 실적배당형 보험이 있다. 유가증권은 채권, 주식, 수익증권, 기업어음, 주택저당증권등이 있다. 기타운영방법에는 환매조건부채권 매수계약, 장내/외 파생상품 거래계약, 발행어음, 표지어음이 있다.

확정기여형연금 및 개인형퇴직연금의 경우 적립금운용에 대한 책임이 근로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적립금운용을 위해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을 반드시 하나 이상 포함해서 운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도별로 위험한 투자를 할 때 무분별한 투자로 인해 적립금운용의 큰 손실을 막기 위해 운용방법에 대해 투자 한도를 제시하고 있다. 투자한도는 DB의 경우 사용자의 적립금 기준이며 DC의 경우 가입자의 적립금 기준으로 적용이 된다.

10) 근로자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말하고,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말한다.

<표 2-5-1> 확정급여형제도(DB)의 위험자산 투자한도

위험자산		투자한도
개별투자	I. 주식 등에 대한 직접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국내외 상장주식 (외국법인 발행주식 포함), 증권예탁증권 • ② 주식관련 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후순위채권 • ③ 파생결합증권(최대 손실범위 : 원금의 10~40%) • ④ 외국의 투자적격채권 	30%
	II. 주식형펀드 등에 대한 간접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주식형(주식편입비중 60% 이상) 펀드 • ② 파생상품 부동산·실물·특별자산 펀드 	50%
	III. 혼합형펀드 등에 대한 간접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혼합형(주식편입비중 40%초과 60%미만) 펀드 • ② 투자적격등급 이외의 채권 등에 30%이상 투자하는 펀드 • ③ 외국의 투자적격채권에 50%이상 투자하는 펀드 • ④ II·III(①~③)의 위험자산에 50%이상 투자하는 재간접펀드 	50%
총투자	I, II, III의 위험자산에 대한 총투자한도	70%
집중투자	동일회사가 발행한 증권	10% (발행주식수의 10%)
	동일 계열기업군 소속 기업이 발행한 증권	15% (발행주식수의 15%)
	자산관리계약이 신탁인 경우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편입한도(총 적립금이 10억 원 미만은 적용 제외)	70% ('13.4.1부터 50%)
이해상충	사용자와 계열회사 또는 사용자와 지분법 관계에 있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	5% (발행주식수의 5%)

출처 :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종합안내 홈페이지

<표 2-5-2> 확정기여형제도(DC) 및 개인형퇴직연금의 위험자산 투자한도

위험자산		투자한도
개별투자	I. 주식 등 위험자산에 대한 직접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국내외 상장주식(외국법인 발행주식 포함), 증권예탁증권 • ② 주식관련 사채(CB, BW, EB 등), 후순위채권 • ③ 파생결합증권(최대 손실범위 원금의 10~40%) 	투자금지
	II. 펀드에 대한 간접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파생상품·부동산·실물·특별자산 펀드 • ② 투자적격등급 이외의 채권 등에 30%이상 투자하는 펀드 • ③ ①~②의 위험자산에 50%이상 투자하는 재간접펀드 	투자금지
	III. 주식형 펀드 등에 대한 간접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주식형·혼합형 펀드 • ② 부동산 펀드(임대·관리형) • ③ ①~②의 위험자산에 50%이상 투자하는 재간접펀드 	40%
	IV. 외국 유가증권 등에 대한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외국의 투자적격채권 • ② 외국의 투자적격채권에 50%이상 투자하는 펀드 • ③ ②의 위험자산에 50%이상 투자하는 재간접펀드 	30%
총투자	I의 위험자산을 펀드형태로 투자할 경우 총투자한도	40%
	동일회사가 발행한 증권	30%
	동일 계열기업군 소속 기업이 발행한 증권	40%
집중투자	자산관리계약이 신탁인 경우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편입한도(총 적립금이 5,000만원 미만은 적용 제외)	70%(‘13.4.1부터 50%)

출처 :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종합안내 홈페이지

<표 2-5-3> 집중투자한도에 대한 특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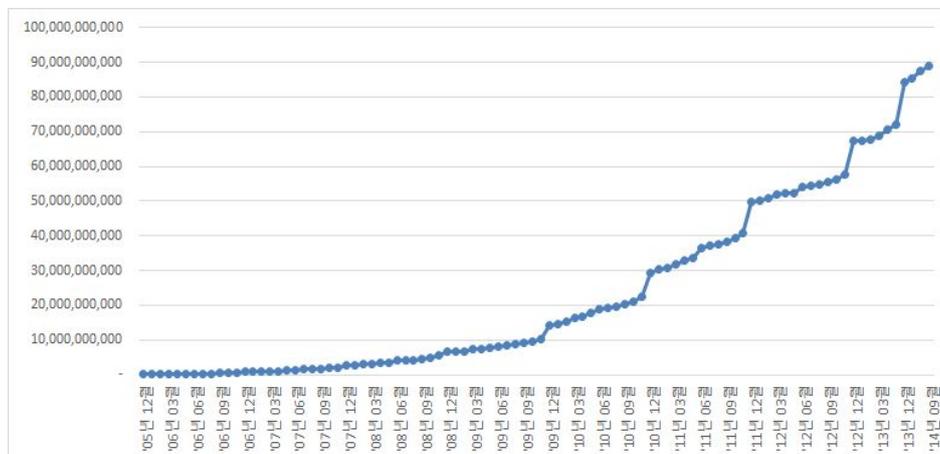
사유	투자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정적 금융기관'이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 예·적금, 원리금보장형 보험 등 • 국·공채, 통화안정증권, 정부보증채권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법인 발행 지방채 또는 특수채 	30%
<p>< 한도초과에 대한 특례 > 다음의 사유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차기 운용방법 변경 전까지는 한도를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용방법의 시장가치(공정가액)의 변동 • 예상치 못한 경미발생 등에 의한 적립금 총액의 감소 • 계열사 및 지분법 적용대상 기업 범위 변동 • 기업의 인수·합병 • 주식의 소각 •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자산의 매각 • 법령 및 감독규정 개정 	6월이내(수시로 운용방법 변경이 가능한 경우)

출처 :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종합안내 홈페이지

6. 퇴직연금제도의 현황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2005년 12월에 퇴직연금 전체 적립액은 163억 원의 규모에서 현재 2014년 9월 기준 약 89조원의 규모로 성장하고 있으며, 전분기(2014년 6월 기준 : 약 87조원 5,102억 원) 대비 1조 5,2361억 원(1.7%) 증가하였다. <그림 2-6-1>는 매년 적립금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6-1> 연도별 전체 적립금 현황



자료 :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적립금 현황 (2014년 9월말)

2014년 9월 기준 적립금 측면에서 퇴직연금제도의 종류의 비율은 확정급여형제도(DB)가 68.1%로 가장 높고 확정기여형제도(DC)가 23%이고 IRP(개인형) 8.1%, IRP(기업형)이 0.8%순이다. 확정급여형제도(DB)를 대부분의 대기업이 채택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DB의 적립금 비율이 높다.

운용방법별로는 원리금보장상품 비중은 92.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실

적배당형상품 비중은 6.4%에 불과하다. 원리금보장상품 중에서는 예금이 56.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금리형 보험 34.3%의 비중을 가지고 있으며 기타(ELB, 국공채 등)가 8.9%를 차지하고 있다.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방법 중 원리금보장상품은 무조건 하나 이상 투자해야하는 운용제도가 위험회피적인 투자를 현상을 보이고 있다.

2014년 9월 기준 퇴직연금의 가입자 수는 529만 명으로 전체 상용근로자(1,037만 명)대비 가입률은 51%수준이다. 제도유형별 가입자 수는 확정급여형제도(DB)는 60.8% 확정기여형제도(DC) 38.1% 기업형 IRP는 1.6%의 비중으로 가입하고 있다.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은 총 27만 2,455개소로 전체 사업장(1,687,476개소) 대비 16.1%이다. 제도유형별 도입사업장 현황은 확정기여형제도(DC)단독 도입장은 53.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확정급여형제도(DB) 단독 도입장은 30.5%이며, 확정급여형제도(DB)와 확정기여형제도(DC)을 동시 도입하고 있는 사업장은 2.7%이며 기업형IRP 도입사업장은 12.9%를 차지하고 있다.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대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76.3%이지만,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의 도입률은 16%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대기업은 DB 도입 비중이 높은 반면 중소기업은 DC 도입 비중이 높다. 그래서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 전체 기준으로 DC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지만, 가입자와 적립금 측면에서는 DB의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그래프는 적립금 측면에서 제도 유형별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DB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제3장 퇴직연금 소득대체율 분석가정 및 결과

1. 소득대체율 개념

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 대비 은퇴 후 소득의 비율이지만 연구자의 판단이나 연구의 목적에 따라 산출방법은 다양하다. 분모부분인 은퇴 전 소득의 정의에 따라 소득대체율의 크기가 달라진다. 또한 은퇴 후 소득도 금융자산, 부동산, 사적 이전 등의 총 소득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연금자산으로 제한할 것인지, 연금자산은 어떻게 추정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은퇴 전후 소득을 세전 또는 세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은퇴 시점은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등 추정기준 및 산출방법에 따라 소득대체율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은퇴 전 소득은 최종소득, 생애평균소득, 최고소득기간 몇 년간의 평균소득, 은퇴 전 몇 년간의 평균소득 등을 사용하고 있다. 생애평균소득은 미국의 OASDI(Old-Age,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 캐나다의 CPP(Canada Pension Plan), 일본의 후생연금,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경우 급여산식에 개인의 생애평균소득이 반영되어 있어 보장되는 급여수준, 즉 소득대체율이 생애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설정된다.

반면 최종소득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하게 되면 소득추세로 최종소득을 쉽게 예측할 수 있고, 최종소득과의 비교를 통해 은퇴 직후의 소비 가능성의 변화를 나타낼 수 있다. 하지만 최종소득은 실업과 같은 변동 요인들에 의해 변동성이 크고 근로자의 생애소득을 대표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

은퇴 후 소득은 분석의 목적에 따라 금융자산, 부동산, 사적 이전 등의 총 소득을 기준으로 하거나 연금자산으로 제한한다. 은퇴 소득(또는 소비)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또는 은퇴 전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 소득의 추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총 자산을 기준으로 소득대체율 분석이 이루어져야 타당하다. 그러나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분석 자료의 한계, 대다수의 은퇴자에게 은퇴 후 주 소득원은 연금이라는 연구자의 판단 등으로 연금자산을 기준으로 소득대체율 분석을 한다. 또는 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금자산을 기준으로 소득대체율을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2. 분석가정

퇴직연금 예상 소득대체율 계산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가정을 설정하였다.

첫째, 2014년 신규가입자 대상으로 가입자 소득은 2012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으로 가정하였다. 임금상승률은 매년 동일하게 반영하고 연령별 소득지수를 적용하였다. 소득지수는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대비 연령별 평균소득의 상대적인 비율이다.

<표 3-1-1> 연령별 소득지수

연령	전체	연령	전체	연령	전체	연령	전체
20	0.36	31	1.07	42	1.15	53	0.97
21	0.41	32	1.10	43	1.13	54	0.96
22	0.46	33	1.14	44	1.11	55	0.92
23	0.55	34	1.17	45	1.10	56	0.90
24	0.64	35	1.19	46	1.10	57	0.87
25	0.73	36	1.20	47	1.08	58	0.85
26	0.81	37	1.18	48	1.07	59	0.80
27	0.88	38	1.18	49	1.05		
28	0.94	39	1.16	50	1.03		
29	0.98	40	1.17	51	1.00		
30	1.03	41	1.16	52	0.99		

자료: 국민연금공단

둘째, 생애평균소득(A)은 임금상승률로 수급직전 시점으로 재평가하여 산출하였다.

$$A = \frac{1}{n} \sum_{t=1}^n (g \times W_t) \times (1+w)^{n-t}$$

g : 연령별 소득지수, W_t : t 시점 소득

w : 임금상승률, n : 가입기간

셋째, 소득대체율의 수급연령은 60세로 가정하였으며, 가입기간은 20년, 30년, 40년 3가지 경우로 가정하고, 수급기간은 5년, 10년, 15년, 20년, 24년(국민생명표(2012) 기준 60세 평균기대여명), 종신으로 가정하였다.

넷째, 보험료율은 현행 8.33%를 적용하였다.

다섯째, 운용수익률과 임금상승률 4%을 기준으로 가정하였다.

여섯째, 소득대체율은 생애평균소득 대비 연금지급 첫해 연금월액과 최종소득 대비 연금지급 첫해 연금월액 두 가지 정의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금급여는 확정연금(5년, 10년, 15년, 20년, 24년)과 종신연금으로 산출하였다. 종신연금은 2012년 국민생명표를 사용하였다. 퇴직연금의 급여산식은 다음과 같다.

· 퇴직연금의 급여산식 :

$$\text{확정연금 } P = \frac{TB}{\sum_{i=1}^n \frac{1}{(1+r)^{i-1}}}, \quad \text{종신연금 } P = \frac{TB}{\sum_{i=1}^{\infty} \frac{i-1P_{60}}{(1+r)^{i-1}}}$$

$$TB = \sum_{t=s}^{e-s} k \times W_t \times \prod_{j=1}^{e-t} \frac{(1+w)}{(1+r)}$$

P : 연금액 TB : 보험료 적립 총액

n : 수급기간 ${}_tP_{60}$: 60세인 사람이 t 년동안 생존할 확률

s : 가입시점, e : 수급개시시점, $e-s$: 가입기간

k : 보험료율, W : 소득, w : 임금상승률 r : 운용수익률

소득대체율은 각 수급기간별로 세 가지 경우를 통해 시나리오 분석을 해 보았다.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변화시키는 큰 요인은 가입기간, 임금상승률과 운용수익률을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분석을 해보고자 가입기간, 임금상승률과 운용수익률을 변화시켜서 소득대체율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 경우는 임금상승률이 불변일 때 운용수익률에 따른 소득대체율을 구하였다. 두 번째 경우는 임금상승률과 운용수익률이 둘 다 변화하였을 때 소득대체율을 구하였다. 하지만 이 경우 임금상승률과 운용수익률의 변화량은 같이 움직인다고 가정하였다. 마지막 경우는 운용수익률이 동일할 때, 임금상승률에 따른 소득대체율을 분석해 보았다. 또한 소득대체율 산출 시 분모부분을 최종소득과 생애평균 소득으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보험요율이 변화하였을 때 소득대체율의 민감도 분석도 해보았다.

3. 분석결과

<표 3-2-1>~<표 3-2-4>는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하여 소득대체율을 비교해 보기 위해 가입기간 20년일 때 연금종류별 소득대체율이다.

<표 3-2-1> 연금종류별 퇴직연금 소득대체율
(평균임금상승률 4% 평균운용수익률은 4%(±1%))

(단위 : %)

운용 수익률	생애평균소득			최종소득		
	3%(비관)	4%(현재)	5%(낙관)	3%(비관)	4%(현재)	5%(낙관)
5년 확정연금	33.0	37.4	42.4	42.2	47.8	54.3
10년 확정연금	17.7	20.5	23.8	22.7	26.3	30.4
15년 확정연금	12.7	15.0	17.7	16.2	19.2	22.6
20년 확정연금	10.2	12.3	14.7	13.0	15.7	18.8
24년 확정연금	8.9	10.9	13.3	11.4	14.0	17.0
종신연금	9.1	11.2	13.8	11.6	14.3	17.6

<표 3-2-2> 연금종류별 퇴직연금 소득대체율
(평균임금상승률/운용수익률 둘 다 4%(±1%)로 변동)

(단위 : %)

운용 수익률	생애평균소득			최종소득		
	3%(비관)	4%(현재)	5%(낙관)	3%(비관)	4%(현재)	5%(낙관)
5년 확정연금	36.4	37.4	38.5	46.5	47.8	49.2
10년 확정연금	19.5	20.5	21.6	25.0	26.3	27.6
15년 확정연금	14.0	15.0	16.1	17.8	19.2	20.5
20년 확정연금	11.2	12.3	13.4	14.3	15.7	17.1
24년 확정연금	9.8	10.9	12.1	12.6	14.0	15.4
종신연금	10.0	11.2	12.5	12.8	14.3	15.9

<표 3-2-3> 연금종류별 퇴직연금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기준)
(평균운용수익률은 4% 불변이고 임금상승률이 2%~6% 변동)

(단위 : %)

임금 상승률	5년 확정연금	10년 확정연금	15년 확정연금	20년 확정연금	24년 확정연금	종신연금
2%	45.8	25.1	23.4	15.0	13.4	13.7
3%	41.3	22.7	21.1	13.5	12.1	12.4
4%	37.4	20.5	19.2	12.3	10.9	11.2
5%	34.0	18.7	17.4	11.1	9.9	10.2
6%	31.1	17.0	15.9	10.2	9.1	9.3

<표 3-2-4> 연금종류별 퇴직연금 소득대체율(최종소득기준)
 (평균운용수익률은 4% 불변이고 임금상승률이 2%~6%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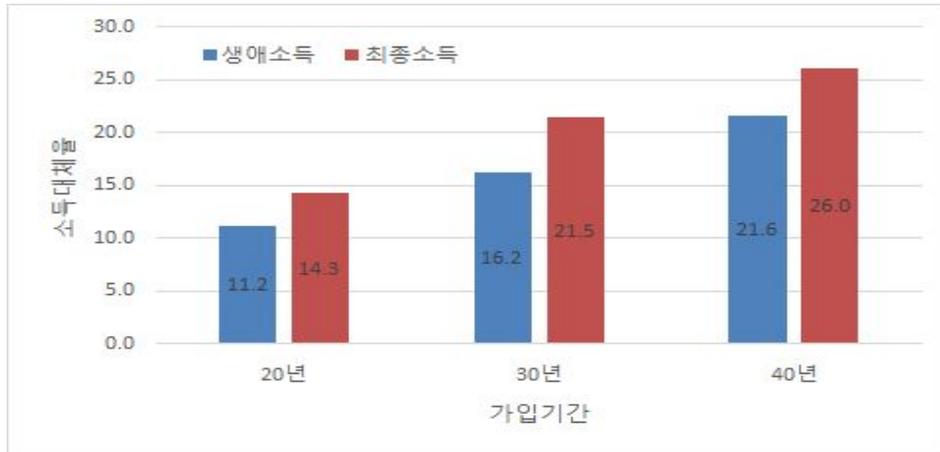
(단위 : %)

임금 상승률	5년 확정연금	10년 확정연금	15년 확정연금	20년 확정연금	24년 확정연금	종신연금
2%	58.5	32.1	18.3	19.2	17.1	17.5
3%	52.8	29.0	16.5	17.3	15.4	15.8
4%	47.8	26.3	15.0	15.7	14.0	14.3
5%	43.5	23.9	13.6	14.2	12.7	13.0
6%	39.7	21.8	12.4	13.0	11.6	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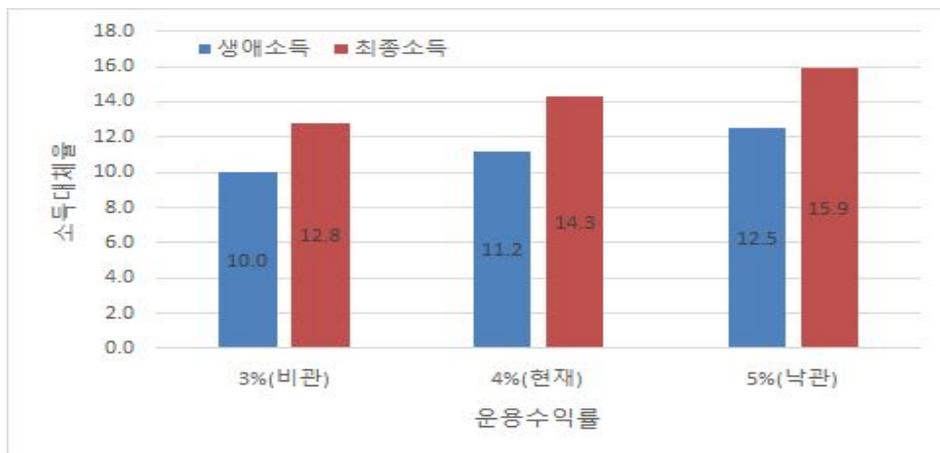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소득대체율의 분모부분인 은퇴 전 소득을 생애평균소득과 최종소득 두 가지 경우를 나누어 산출해 보았다. 소득대체율은 전체적으로 생애평균소득으로 산출한 결과 값이 최종소득으로 산출한 결과 값보다 작은 값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가입기간(재직년수), 임금상승률, 운용수익률, 연금으로 전환 시 연금의 형태에 따라 소득대체율을 변화시키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2-1>~<그림 3-2-2>은 연금전환 시 종신연금 형태로 전환했을 때 가입기간과 운용수익률의 변화에 따른 소득대체율을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생애평균소득 기준으로 11.2%~21.6%를 나타내고 있으며 운용수익률에 따라 9.1%~13.8%를 나타내고 있으며 최종소득 기준으로 14.3%~26.0%를 나타내고 있으며 운용수익률에 따라 11.6%~17.6%를 나타내고 있다. 소득대체율의 정의에 따라 최대 4.4%가 차이 남을 알 수 있다.

<그림 3-2-1> 가입기간별 소득대체율
(임금상승률 4% 운용수익률 4% 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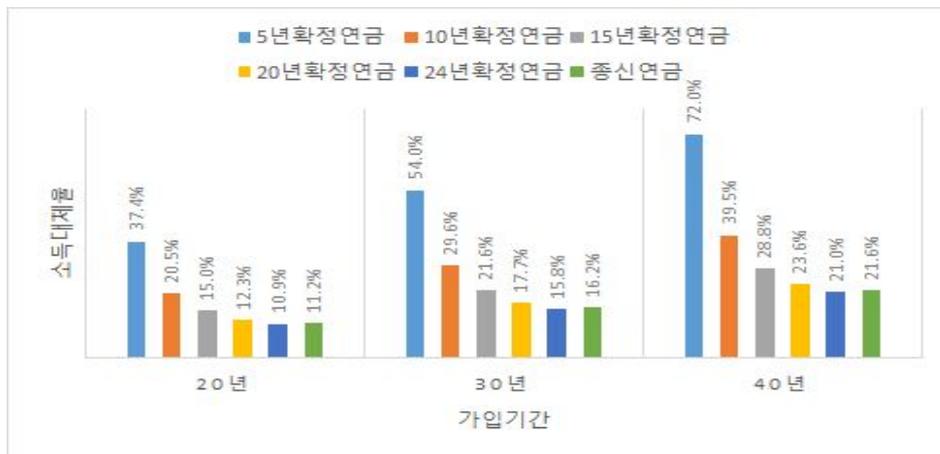


<그림 3-2-2> 운용수익률 변화에 따른 소득대체율
(임금상승률 4% 가입기간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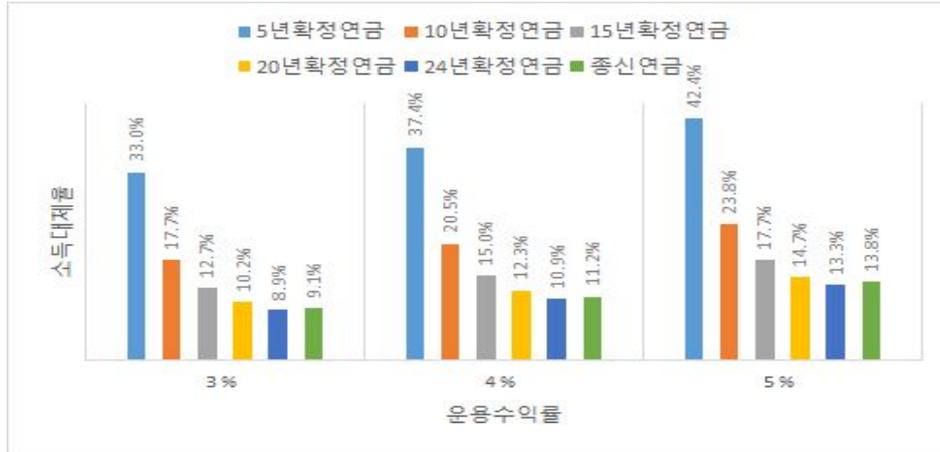


<그림 3-2-3>~<그림 3-2-4>는 생애평균기준 가입기간과 운용수익률에 따른 각 연금별 소득대체율을 나타내고 있다. 수급기간 5년 확정연금의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37.4%~72%, 운용수익률에 따라 33.0%~42.4%를 나타내고 있으며, 10년 확정 연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20.5%~39.5% 운용수익률에 따라 17.7%~23.8%를 나타내 고 있다. 15년 확정연금의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15.0%~28.8%, 운용수익률에 따라 12.7%~17.7%를 나타내며, 20년 확정연금의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10.2%~23.6%, 운용수익률에 따라 10.2%~14.7%를 나타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24년 확정연금의 경 우 가입기간에 따라 10.9%~21.0%, 운용수익률에 따라 8.9%~13.3%를 나타내고 있 다. 가입기간은 길수록 운용수익률은 높을수록 소득대체율은 높아진다. 가입기간과 운용수익률은 적립금의 크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적립금의 크기가 커지면 연금액의 크기도 커지기 때문에 소득대체율도 올라간다.

<그림 3-2-3> 가입기간에 따른 각 연금별 소득대체율
(임금상승률 4%, 운용수익률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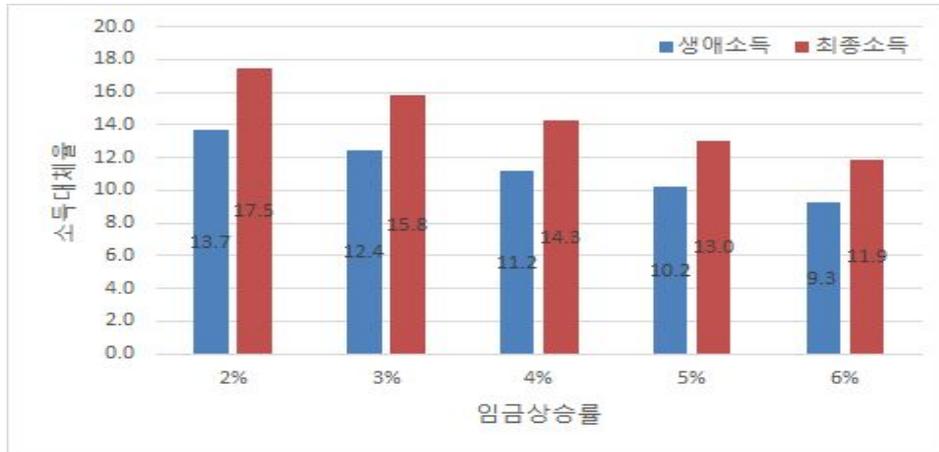


<그림 3-2-4> 운용수익률에 따른 각 연금별 소득대체율
(임금상승률 4%, 가입기간 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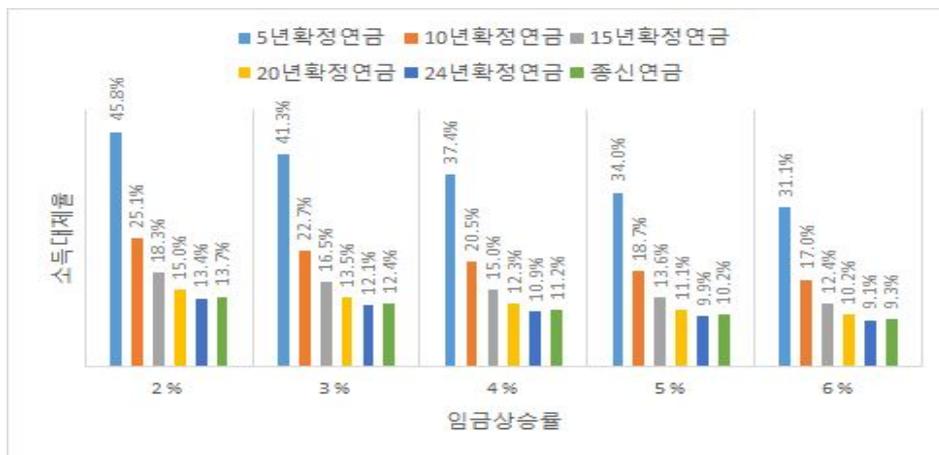


<그림 3-2-5>는 연금액이 종신연금일 때 임금상승률이 변화함에 따른 소득대체율이다. <그림 3-2-6>는 생애평균소득기준 각 연금별로 임금상승률에 따라 소득대체율이다. 임금상승률이 높아질수록 5년 확정연금의 경우 45.8%에서 31.1%로 하락하고 있으며, 10년 확정연금의 경우 25.1%에서 17%로 하락하고 있으며, 15년 확정연금의 경우 18.3%에서 12.4%, 20년 확정연금의 경우 15%에서 10.2%, 24년 확정연금의 경우 13.4%에서 9.1%로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임금상승률이 상승하면 부담금의 증가로 인해 소득대체율의 은퇴 전 소득인 분자부분이 커지지만 은퇴 후 소득인 최종소득 및 생애평균소득이 증가하여 분모부분도 같이 상승한다. 따라서 임금상승률이 상승이 소득대체율을 높이지는 못한다.

<그림 3-2-5> 임금상승률 변화에 따른 소득대체율
(운용수익률 4% 가입기간 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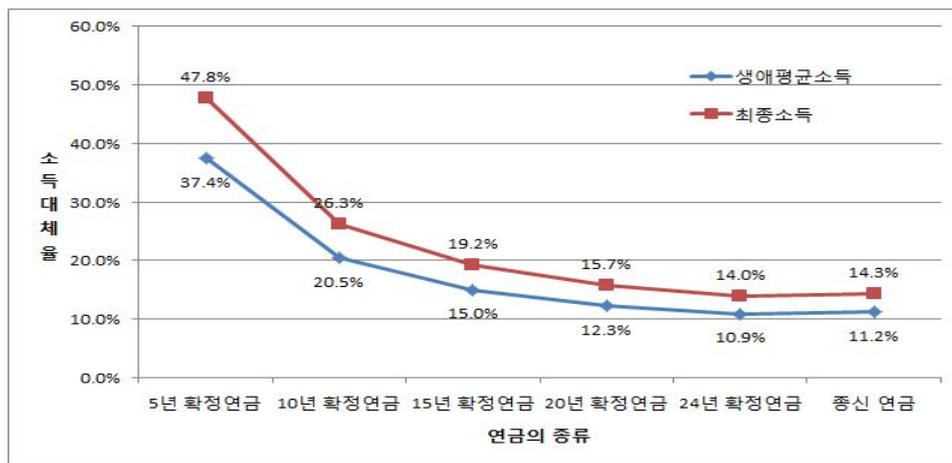


<그림 3-2-6> 임금상승률 변화에 따른 각 연금별 소득대체율
(운용수익률 4% 가입기간 20년)



<그림 3-2-7>는 가입기간이 20년이고 임금상승률과 운용수익률이 4%라고 가정하였을 때 연금종류별 소득대체율이다. 5년 확정연금의 경우 소득대체율(47.8%, 37.4%)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5년 확정연금의 소득대체율은 높지만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기간이 너무 짧다. 24년 확정연금의 소득대체율은 5년 확정연금과 비교해서 소득대체율은 낮아지지만 노후소득보장기간은 약 5배 늘어나는 장점이 있지만 수급기간이 늘어나는 대신 소득대체율은 낮아진다. 종신연금의 경우는 소득대체율은 24년 확정연금과 비슷하지만 노후소득은 사망할 때 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그림 3-2-7> 연금종류별 퇴직연금 소득대체율
(가입기간 20년, 임금상승률=운용수익률=4%)



<표 3-2-5>는 퇴직연금의 보험요율을 1% 증가 시켰을 때 소득대체율의 변화를 살펴본 표이다. 가입기간은 20년, 운용수익률과 임금상승률은 4%일 때 연금의 종류에 따라 1%p~6%p가량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퇴직연금의 경우 추가납입이 가

능하므로 은퇴계획에 따라 가입자의 추가납입을 통해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방안이 있다.

<표 3-2-5> 보험요율 시나리오

(단위 : %)

보험요율	생애평균소득		최종소득	
	8.33%	9.33%	8.33%	9.33%
5년 확정연금	37.4	41.9	47.8	53.6
10년 확정연금	20.5	23.0	26.3	29.3
15년 확정연금	15.0	16.8	19.2	21.4
20년 확정연금	12.3	13.7	15.7	17.5
24년 확정연금	10.9	12.2	14.0	15.6
종신연금	11.2	12.0	14.3	16.0

현행법상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해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이는 노후에 대한 개인적 차원의 대비책으로써의 연금저축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이다. 2014년 현재 연 400만원을 퇴직연금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총 부담금 비율은 13.8%이며, 추가 부담금은 약 5.5%p를 더 납입해야한다. 13.8%를 가입기간동안 납입한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소득대체율은 <표 3-2-6>과 같다. 종신연금과 24년 확정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살펴보면 약 20%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가입기간 동안 부담금비율 13.8%를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400만원~570만원을 납입하여야 한다. 현행법상의 연 400만원을 상회하는 금액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추가납입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연간 400만원 한도로 제한되어, 400만 원 이상 추가 납입에 대한 특별한 유인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추가 납입액의 증가를 유도 하기 위해서는 법정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표 3-2-6> 보험요율 13.8%일 때 소득대체율

	5년 확정연금	10년 확정연금	15년 확정연금	20년 확정연금	24년 확정연금	종신 연금
생애평균 소득	62.0	34.0	24.8	20.3	18.1	18.6
최종 소득	79.2	43.5	31.7	26.0	23.1	23.7

<표 3-2-7>는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국민연금과 비슷한 수준인 20%를 달성 하기 위해 얼마나 추가납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국민연금과 수급기간이 동일한 종신연금과 2012년 기준 기대여명인 24년인 확정연금을 기준으로 살펴 보았다. 소득대체율 20%를 달성하기 위해 24년 확정연금은 12%, 15.3% 부담금 비율이 필요하고 종신연금은 17.9%, 14%가 필요하다. 8.33%를 기준으로 약 4%p~ 10%p를 추가로 납입해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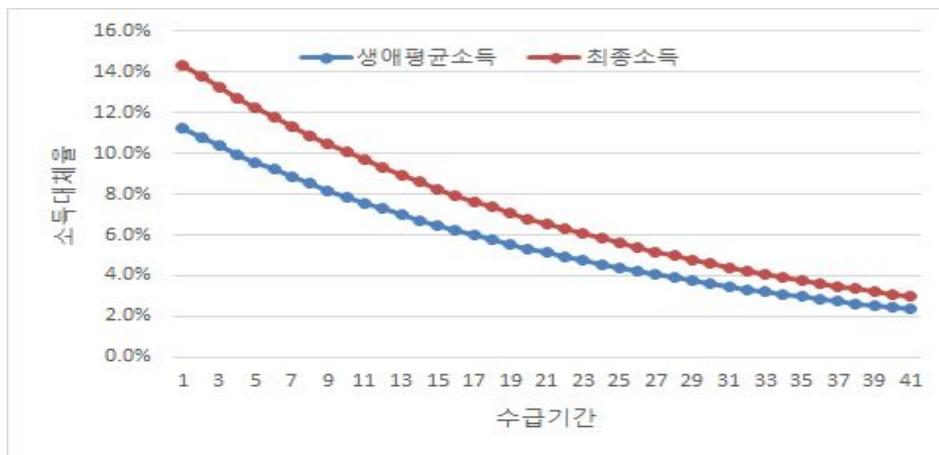
<표 3-2-7> 보험요율 시나리오

(단위 : %)

	생애평균소득	최종소득
24년 확정연금	15.3	12.0
종신연금	17.9	14.0

마지막으로 <그림 3-2-8>는 수급기간에 따라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국민연금은 수급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어 연금액이 달라진다. 하지만 퇴직연금의 연금액은 수급기간이 경과해도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므로 소득대체율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노후소득을 위한 퇴직연금을 계획할 시 물가상승률에 따른 연금액의 가치하락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한다.

<그림 3-2-8> 수급기간에 따른 퇴직연금 소득대체율의 변화



제4장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 개선사항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사항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많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의 연금전환율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표 4-1-1>과 같다.

<표 4-1-1> 퇴직연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관점	문제점	개선방안
과세제도	일시금과 연금 수령 시 세제혜택의 차이	1. 단일 세제 도입 2. 연금 소득 감세혜택 3. 추가부담금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개인형퇴직연금(IRP)	IRP가 노후소득보장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함	1. 다양한 형태의 IRP제도 개발 및 도입 2. IRP제도 가입대상 전체 납세자로 확대 3. 부담금 추가납입 허용에 관련된 대비
연금전환율	은퇴 시 실질적으로 연금으로 전환하는 비율이 10%가 되지 않음	1. 연금화 유도화 정책이 필요 2. 근로자 성향에 맞는 연금상품 개발 3. 일시금 옵션의 폐지 및 부분적 허용 4. 기업입장에서 교육 강화

과세제도의 관점에서 문제점은 일시금 수령 시와 연금 수령 시의 과세제도가 동

일하지 않고 차이가 있어서 어느 한쪽으로 유도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개선안은 일시금 수령과 연금전환의 과세 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연금소득에 대한 감세혜택을 줘야 한다고 제시한다. 갈수록 DC형 제도를 도입하는 비율이 늘어나면서 근로자의 DC형 제도의 가입을 유인하기 위해 추가부담금에 대한 소득공제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시한다.

우리나라 IRP의 개선방안으로 다양한 IRP종류를 개발하고 도입하여 선택의 폭을 넓히고 가입자의 범위도 확대하여야 하며, 부담금 납입 추가비용에 대한 법률개정에 대비하는 정책을 준비해야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 퇴직연금제도에 가입을 하고 있어도 정작 연금으로 전환하는 비율인 연금 전환율이 낮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연금화유도정책이 없기 때문에 연금화유도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며, 일시금 옵션의 폐지 및 부분비용 등의 정책도 필요하다. 또한 근로자의 성향에 맞는 연금 상품의 개발이 필요하고, 기업의 입장에서 가입자의 연금화 교육도 필요하다.

퇴직연금은 다양한 형태로 수급 받을 수 있으며, 추가납입도 가능하다. 종신연금 형태인 국민연금과 동일한 종신연금으로 전환 시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약 11%~14.3%를 나타내고 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가 채 되지 않아 노후를 대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보험요율이 정해져 있어 가변성이 적은 국민연금보다 퇴직연금의 역할이 보다 더 중요하게 된다. 따라서 제도개선을 통해 연금전환 시 세제혜택, 연금화전환정책 등 연금 전환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 추가적으로 가입자의 추가 부담금의 증가를 유인하기 위한 정책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연금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미래에 대한 전략적인 분석을 통해 가입자의 판단에 따라 추가부담금이나 가입기간을 늘려 미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제5장 결 론

2005년 12월에 도입된 지 10년이 흘러가고 있는 현재 퇴직연금제도의 과도기라고 할 수 있다. 퇴직연금제도의 연금전환율의 문제라든지 퇴직연금의 사각지대에 처한 근로자들의 문제, 퇴직연금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부족 등 부족한 부분이 많다. 특히 퇴직연금 가입자 및 적립금은 늘어나고 있지만 연금 전환율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5년 이상 확정연금으로 전환하는 모든 가입자가 포함되므로 실질적으로 퇴직연금제도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수급기간별 확정연금의 소득대체율과 종신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산출한 결과 20년 가입기간 기준 5년 확정연금 33%~58.5%, 10년 확정연금 17.7%~25.1%, 15년 확정연금 12.7%~18.3%, 20년 확정연금 10.2%~15.0%, 24년 확정연금 8.9%~17.1%가 산출되었으며 종신연금의 경우 9.1%~13.7%가 산출되었다. 분석결과 수급기간이 짧은 확정연금은 소득대체율은 높지만 길어지는 노후생활을 보장하기는 어렵고 수급기간이 긴 확정연금은 소득대체율은 낮지만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다 길게 보장할 수 있다. 특히 종신 연금의 경우 소득대체율은 수급기간이 긴 확정연금과 비슷하지만 죽을 때 까지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으로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낮은 연금액은 추가적인 부담금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당장의 목돈을 위해서는 일시금수령이나 수급기간이 짧은 연금전환이 유리하다. 하지만 노후생활 전체를 보장해주지는 못한다. 보다 더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종신연금이나 수급기간이 긴 연금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가입자의 판단에 따라 퇴직연금의 가입기간 및 추가부담금을 통해 전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강성호 (2011). 생애기간을 고려한 공·사적 연금소득 추정, <보험학회지>
- [2]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홈페이지(<http://www.moel.go.kr/pension>)
- [4]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2012)
- [5]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홈페이지(<http://pension.fss.or.kr>)
- [6] 김미재, 이세롬(2012)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소득확보를 위한 퇴직연금의 연금화 방안,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 [7] 김수성(2010)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연금소득 과세 개선방안 : 공적·퇴직·개인연금의 통합적 고찰을 중심으로, <조세연구>
- [8] 김영기(2005). 초 고령화 사회와 연금제도. 학현사
- [9] 김재현(2011), 퇴직연금 지배구조와 관리계약 개선 연구 : 영국과 독일 제도의 비교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보장학회>
- [10] 김종서(2006). 한편으로 끝내는 퇴직연금. 미래지식
- [11] 류건식, 이봉주 (2008). 사적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 효과 분석, <기업경영연구>
- [12] 류건식, 이봉주, 김동겸 (2009). 사적연금 소득대체율 추정에 의한 노후소득보장수준 평가, <보험학회지>
- [13] 류건식, 이상우(2009) 노후소득 보장 기능 강화를 위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개선방안, <보험연구원 KIRI Weekly(이슈)>
- [14] 방하남 외(2006). 근로자의 노후보장을 위한 퇴직연금. 중앙경제
- [15] 성주호, 최윤호, 박준범(2014), 연금퍼즐에 대한 계리적 분석 및 대안적 연금설계방안, <한국리스크관리학회>
- [16] 신승희, 손현섭, 이항석(2014). 생존기간을 고려한 생애소득대체율의 추정. <한

국데이터정보과학회>

[17] 이경희(2011),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전환 유도 방안, <보험연구원 정책보고서>

[18] 임병인, 강성호(2005). 국민·퇴직·개인연금의 소득계층별 노후소득보장효과, <보험개발연구>

[19]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연구소(2010) 퇴직연금 실무해설서. 한국투자증권

[20] 한정림, 이항석(2013). 국민·퇴직·개인연금의 소득대체율 산출을 위한 연금수리 모형,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21] OECD, (2013), Pensions at glance 2013, OECD Publishing.

ABSTRACT

Study on retirement pension replacement rates

Son, Hyun Sub

Department of Actuarial Science

Sungkyunkwan University

Korean retirement pension plan was introduced in December 2005 has a short history of about 10 years. Due to a life expectancy increases, the role of retirement pension is increasing with national pension

First of all, this paper explained retirement pension. Then, replacement rate was calculated through a variety of scenario analysis. For the analysis of five years fixed annuities 37.4% (lifetime average earnings) and 47.8% (final salary) into which represents the highest replacement rate, 24 years fixed annuities 10.9% (lifetime average earnings) and 14.0%(final salary) shows the lowest income replacement rate. Terms of policy, operating returns, wage growth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change in the replacement rate.

This paper proposes an improvement of the plan that looks at the Korean retirement pension plan.

Keywords: Fixed annuities, Life expectancy, Improvement, Retirement pension, Replacement rates, Whole life annuities.